6. 地方稅法施行令中改正令(案)立法豫告

內務部公告 第1995－101號 1995. 11. 27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제도를 현재 영업장소재지 시·군을 경유한 후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만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도 주소지 시·군의 내부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이자의 이자율을 현재 1일 1만분의 3에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1일 1만분의 2로 인하 조정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고시 하도록 하고,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결정고시된 것을 적용하도록 함.

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제외 대상에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한 토지(3년간)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각각 신설함.

마. 1가구 2차량 중과제외대상에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여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한 자와 근로소득·사업소득·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30세 이상인 자를 포함시켜 취득세·등록세 부담을 경감토록 함.

바. 경작할 목적의 도로점용면허를 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함.

사.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재 연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 3천 6백만원 이상에서 4천 8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함.

아.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현재 건물가액이 당해 건물 부속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이를 100분의 6에 미달하는 경우로 조정하여 종합토지세 부담을 경감함.

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다음의 토지를 추가함.

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간척한 농지

②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③ 염전을 폐지한 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④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용에 사용하는 토지

⑤ 종교단체등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토지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과세기준을 30일 전(매년 4월한)까지 결정고시하도록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결정고시된 것을 적용하도록 함.

카.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용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현재 공업용수도 제외되도록 되어 있으나 과세대상이 되도록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지방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내무부장관(참조 : 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